

의안번호	
의 퇴 인	손솔 의원
회 답 일	2025.9.18.
추 계 번호	25B47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구직등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신설) 1. 구직급여 2. 이직준비급여	의무규정
2	안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삭제>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u>	의무규정
3	안 제59조의2(이직준비급여) 신설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인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1회 90일을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 상당의 급여(이하 “이직준비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급여기간 만료 후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이 되어야 다시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1회 180일을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 상당의 급여(이하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급여기간 만료 후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이 되어야 다시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59조의3(청년 이직준비급여) 신설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18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자, 예술인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총 600일을 한도로 하는 구직급여 상당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18세부터 34세까지 자영업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동안 자영업 청년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함(제2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안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3	안 제59조의2(이직준비급여) 신설		
4	안 제59조의3(청년 이직준비급여) 신설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조문을 삭제하여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와 이들 중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자의 규모를 추산하여야 하나, 자발적 이직의 여러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피보험자의 수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산출에 한계가 있음
- 현행법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자의 노동시장과 구직급여 수급 행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 예측이 곤란함

□ 개정안은 이직준비급여 및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를 신설하려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직준비급여 지급 대상인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인 근로자·예술인등·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추산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규정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이직준비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회 90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실제 이직준비급여의 수급기간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실제 수급기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곤란함
- 또한, 개정안은 이직준비급여의 급여기간이 만료된 후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이 되어야 다시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해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당 요건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의 규모를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의 지급대상은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이나,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규정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의 수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
 - － 개정안은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1회 180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가 지급될 경우 개인별로 수급기간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실제 수급기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곤란
 - － 또한, 개정안은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의 급여기간이 만료된 후 피보험기간이 6년 이상이 되어야 다시 자영업자 이직준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해당 요건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의 규모를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청년 이직준비급여를 신설하려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청년의 이직준비급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 및 수급기간 등에 대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18세부터 34세까지의 근로자·예술인등·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와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18세부터 34세까지 자영업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추산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산출에 한계가 있음
 - － 개정안은 청년 이직준비급여의 지급 한도를 횡수에 제한 없이 최대 600일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장래에 발생할 청년 이직준비급여의 수급기간은 개인의 전직 및 폐업 횡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행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 중 34세 이하인 수급자의 구직급여 평균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음

[표 1] 구직급여 평균지급일수

(단위: 일)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34세 이하	136.7	142.9	140.5	138.8	140.5
전체	150.9	159.1	157.0	154.7	156.6

주: 구직급여(연장포함) 수급종료자 실 지급일 기준이며, 자영업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